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9월 30일, 이해식의원 등 5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 :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31.) :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4.6.) :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 의원)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약화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이후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왔으나,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정책 효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재정 지원·정책 집행이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초광역특별계정 등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되는 “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일괄하여 변경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 및 위촉위원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및 초광역특별계정 관련 규정 등의 자구를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되는 “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일괄하여 변경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 및 위촉위원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초광역발전계획·초광역특별협약·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및 초광역특별계정 관련 규정의 자구를 정비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발전 및”을 “성장 및”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균형성장”을 “”균형성장“”으로, “발전 격차”를 “성장 격차”로,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발전을”을 “성장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발전”을 “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발전을”을 “성장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균형발전과”를 “균형성장과”로, “발전을”을 “성장을”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
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의 수립)”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이
하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종합계
획(이하 “지방시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
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
원회는 지방시대”로,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을 현행대로 하기 위
하여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역균
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
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분권균

형성장 종합계획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은”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수립된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로,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변경”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

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11조의2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

항”으로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제 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장의 제목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을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으로 한다.

안 제3장제1절의 제목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을 “균형성장시책의

추진”으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한다.

안 제14조제3호 중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한다.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지역균형발전에”를 “균형성장에”로, “지역균형발전을”을 “균형성장을”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 및”을 “균형성장 및”으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균형성장 거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발전 거점”을 “성장 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20조 중 “발전”을 “성장”으로 한다.

안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지원단에”로,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은”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한다.

안 제25조제2항제4호 중 “지역균형”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한다.

안 제26조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전단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지원단”으로, 같은 항 후단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지원단”으로 한다.

안 제30조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2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균형성장사업”으로, “균형발전에”를 “균형성장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을 “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전가능성”을 “성장가능성”으로 한다.

안 제45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47조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58조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한다.

안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안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특별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

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중전의 제13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4조의 제목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으로, “2명을 포함하여 51명”을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제13항 및 제1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1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로, “분과위원회에”를 “지방시대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

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항“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

안 제65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이“으로 한다.

안 제66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67조의 제목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

성장“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8조의 제목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기획단“으로 한다.

안 제69조의 제목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지원조직)“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기획단“으로 한다.

안 제70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71조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로 한다.

안 제72조 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으로 한다.

안 제73조 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74조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한다.

안 제78조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79조제2항제16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안 제81조의2제1항제2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으로 한다.

안 제84조 제1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안 제90조제1항 중 "제78조제2항 · 제79조제2항 · 제80조제2항 및 제81조

제2항“을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출예산 및“을 ”세출예산, “로 하며, ”세출예산 상호“를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로 한다.

안 제94조 중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을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번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법률 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77조제7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31조의3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⑳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㉓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⑧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3항 및 제40조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㉓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제22조의8제2항 및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④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⑦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⑩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⑪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⑫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1호의2, 제4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⑭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 제145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21조제3항제1호, 제225조제1항 및 제22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2항 및 제11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⑧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㉗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 및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지방자치분권 및</u> <u>지역균형발전에 관한</u> <u>특별법</u>		<u>지방자치분권 및</u> <u>균형성장에 관한</u> <u>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 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u>발전</u> <u>및</u>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 하는 <u>지역균형발전</u> 을 추진함으로써 국 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u>지방시대를</u> <u>구현하는 것을</u>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균형성장</u> ----- ----- ----- ----- <u>것을</u> ----- ----- -----.	제1조(목적) ----- ----- ----- ----- <u>성장</u> <u>및</u>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지방자치분권”이 란 국가 및 지방자	1. ----- -----	1. (개정안과 같음)

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이란 지역 간 발전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 6. (생략)

2. 균형성장-----

3. ~ 6. (현행과 같음)

2. “균형성장” ----

----- 성장 격차 -----

--- 성장역량 ---

-----성 장 을

3. -----

--- 성장역량 ---

4. ~ 6. (개정안과
같음)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신 설>

7. (현행과 같음)

8. -----균형
성장-----

8의2. “초광역특별

7. -----

----- 성장 -----

-----.

8. -----

----- 성장 -----
을 -----

-----.

8의2. “지역발전투

	<u>협약”이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말한다.</u>	<u>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u>
<u><신 설></u>	<u>8의3. “초광역특별회계”란 초광역권 단위 사업을 통합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u>	<u>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u>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9. ~ 14. (개정안과 같음)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	15. ----- ----- ----- -----	15. (개정안과 같음)

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 제적·산업적 상승 효과의 발생을 촉진 하고, <u>지역균형발전</u>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하는 성장 거점으로서 제27조 에 따라 지정·고시 되는 지역을 말한 다.	----- ----- ----- ----- ----- <u>균형성</u> <u>장</u> ----- ----- ----- ----- ----- -----.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16. ~ 18. (개정안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 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u>균형발전과</u> 지역의 혁신성장 기 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u>발전을</u>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와 「지 방자치법」 제182 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의 협 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	제3조(국가 등의 책 무) ① ----- ----- ----- ----- ----- ----- ----- ----- ----- ----- -----	제3조(국가 등의 책 무) ① ----- ----- <u>균형성장</u> 과 - ----- ----- ----- <u>성장을</u> ----- ----- ----- ----- ----- -----

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
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
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균형성
장-----

-----.

② -----

-----균형성장-----

-----.

③ -----

-----균형성
장-----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 ----- ----- -----.	
제4조(<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u>)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현행과 같음)	제4조(<u>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u>) ---- ----- --- <u>균형성장</u> --- -----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u>지역균형발전</u>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u>균형성장</u> ----- ----- ----- ----- -----.

<신 설>

제6조(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수립) ① 제
62조에 따른 지방시
대위원회(이하 “지
방시대위원회”라 한
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
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
계획(이하 “지방시

제6조 (자치분권균형
성장 종합계획의
수립) ① -----
자치분권균형성장
위원회(이하 “자치
분권균형성장위원
회) -----

-----자치분권
균형성장 종합계획

<삭 제>

제6조(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수립) ① -
-----지방시대
위원회(이하 “지방
시대위원회”-----

-- 균형성장-----

-----지 방 시
대 종합계획(이하

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

③ 자치분권균형성장

1. -----균형성장

2. -----균형성장

“지방시대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지방시대 계획

③ 지방시대

1. · 2. (개정안과 같음)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⑤ 자치분권균형성장

자치분권균형성장

⑥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수립된 자치분권균형성장

자치분권균형성장

⑦

⑤ 지방시대

지방시대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시대

⑦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

제7조(시·도 자치분

권균형성장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 ① -----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

지방시대

--.

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균형성장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계획

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략)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

계획-----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

-----.

② -----

-----.

1. -----
----- 균형
성장-----

2. (개정안과 같음)

3. ----- 균
형성장시책 -----

4. -----

균형성장-----

③ -----

-----지

<u>방시대</u>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u>지방시대위원회</u>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	<u>치분권균형성장</u>----- ----- ----- ----- -----. ④ ----- ----- -----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방시대</u>----- ----- ----- -----. ④ ----- ----- ----- ----- ----- ----- <u>-지방시대위원회-</u>----- ----- -----. ⑤ (개정안과 같음)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 ----- ----- <u>균형성장</u>----- ----- ----- ----- ----- -----
---	---	--

(이하 “부문별 계
획”이라 한다)을 수
립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초광역권 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

[illegible]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초광역권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_____

_____지
방시 대 위원 회_____

⑤ (개정안과 같음)

제9조(초광역권 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다)의 장은 초광역
권설정 지방자치단
체를 구성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이하 “초광역권발
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
49조에 따른 관광개
발기본계획 및 권역
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자치분권균형성장

지방시대

② (현행과 같음)

③ 초광역권발전계
획은 시·도 계획
과의 연계성 및 정
합성을 고려하여야

②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

자치분권 균형성
장

[illegible]

⑥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 자치분권균형성
장-----

- 지방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 ----- -----.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u>지방시대위원회</u> 는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 -----.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u>지방시대위원회</u> ----- ----- ----- ----- -----.
② <u>지방시대위원회</u> 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 ----- ----- ----- -----.	② <u>지방시대위원회</u> ----- ----- ----- ----- ----- ----- ----- -----.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포상) ①</u> <u>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u>	③ (개정안과 같음) <u>제11조의2(포상) ①</u> - ----- -- <u>균형성장</u> ----- -----

	<u>큰 자에 대하여 예</u> <u>산의 범위에서 포상</u> <u>및 포상금을 지급할</u> <u>수 있다.</u> ② 정부는 「<u>각종</u> <u>기념일 등에 관한</u> <u>규정</u>」에 따른 <u>자</u> <u>치분권 및 균형발</u> <u>전의 날과 연계하</u> <u>여 우수사례를 발</u> <u>굴·포상할 수 있</u> <u>다.</u> 다만, 필요 시 <u>기념일 외의 시기</u> <u>에도 포상할 수 있</u> <u>다.</u> ③ <u>제1항에 따른 포</u> <u>상·포상금 지급 등</u> <u>의 기준·방법 및</u> <u>절차에 관하여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 ----- ----- --. ② 정부는 지방자 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 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 요한 경우 법정기 념일 외의 시기에 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신 설>		
<신 설>	제11조의3(균형성장 영향평가)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제11조의3(균형성장 영향평가)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에서 같다)이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균형성장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3장 <u>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u> 제1절 <u>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u> 제13조(주민 생활기 반 확충과 지역 발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 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 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 른 기금운용계획안 에 포함된 기금사 업 ③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성장영향 평가의 대상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현행과 같음) 제1절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 생활기 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	제66조 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 획안에 포함된 기 금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u>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u> 제1절 <u>균형성장시책의 추진</u> 제13조(주민 생활기 반 확충과 지역 성
--	--	--

<u>전역량 강화</u>)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 역 <u>발전역량</u> 강화 를 위하여 지역공동 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 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 제14조(지역 산업 육 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 사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 의 시장·군수(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구 청장(자치구의 구청	량 강화)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역 산업 육 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현행과 같 음)	<u>장역량 강화</u>) ① - ----- ----- ----- ----- --- <u>성장역량</u> --- ----- ----- ----- ----- ----- ----- ----- ----- -----. 제14조(지역 산업 육 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 ----- ----- ----- ----- -----
---	---	--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 ⑤ (생략)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현행과 같음)

-----.

-----.

1.·2. (개정안과 같음)

3. ---- 성장역량-----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 균형성
장-----

-----.

1. ~ 8.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
흥)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
흥) -----

----- 균형성장
에 -----

균형성장

제17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
물류망 확충) (현행)

제17조(균형성장 거
점 육성과 교통·
물류망 확충) ----

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축
진에 필요한 지역
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물
류망을 확충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
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행정
중심복합도시(이
하 “행정중심복합
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
다), 「기업도시개
발 특별법」에 따

과 같음)

- 균형성장 및 ----

----- 균형성장
거점-----

1. -----

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u>발전 거점</u>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u>성</u> <u>장 거점</u> ----- ----- ----- -----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u>지역균형발전</u>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u>균형성장</u> ----- ----- ----- ----- ----- -----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u>발전</u>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현행과 같음)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 ----- ----- ----- ----- <u>성장</u>----- ----- ----- ----- -----

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치분권균형성장 -----
-----.

---- 자치분권균형성장 -----

-.

1. ~ 4. (현행과 같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지방시대 -----
-----.

----- 지방시대 -----

-.

1. ~ 4. (개정안과

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u>지방시대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 -----<u>자치분권균형성장</u>----- ----- -----. -----<u>자치분권균형성장</u>----- ----- ----- ----- -----. ③ ----- ----- ----- ----- ----- -----<u>자치분권균형성장</u>-----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 -----<u>지방시대</u>----- ----- ----- -----<u>지방시대</u>----- ----- ----- -----. ③ ----- ----- ----- ----- ----- -----<u>지방시대</u>----- ----- ----- ----- -----.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	---	--

활성화) ① ~ ④
(생략)

② 정부는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

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⑤ -----

----- 자
치분권균형성장---

활성화) ① (개정안
과 같음)

② _____

1. ~ 3. (개정안과
같음)

4. ----- 균형성
장-----

⑤ -----

지

방시대 -----

려하여야 한다.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u>지방시대</u> 위원회	⑦ <u>자치분권균형성</u>	⑦ <u>지방시대</u> -----
는 3년마다 공공기	<u>장</u> -----	-----
관의 현황을 조사하	-----	-----
기 위하여 관계 중	-----	-----
앙행정기관의 장 및	-----	-----
공공기관의 장에게	-----	-----
다음 각 호의 자료	-----	-----
의 제출을 요구할	-----	-----
수 있다. 이 경우 자	-----.	-. -----
료 제출 요구를 받	-----	-----
은 중앙행정기관의	-----	-----
장 및 공공기관의	-----	-----
장은 특별한 사유가	-----	-----
없으면 이에 따라야	-----	-----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	1. ~ 3. (개정안과
	음)	같음)
4. 그 밖에 공공기	4. -----	4. -----
관의 현황 조사에	-----	-----
필요한 사항으로서	-----	-----
<u>지방시대</u> 위원회가	- <u>자치분권균형성</u>	- <u>지방시대</u> -----
필요하다고 인정하	<u>장</u> -----	-----
는 사항	-----	
제26조(혁신도시의 지	제26조(혁신도시의 지	제26조(혁신도시의 지

정)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생략)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 -----.	정)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u>지방시대위원회</u>-----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u>지방시대위원회</u>----- ----- -----. ---<u>지방시대위원회</u>----- ----- ----- ----- ----- -----.
---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생략)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③ -----

-----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역혁신융복
합단지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분권균형성
장-----

③ -----

지 방 시 대
위 원 회-----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방시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혁신융복합 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u>지방시대지원단</u>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u>지방시대지원단</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② (생략) <u><신설></u>	----- ----- -----. ③ ----- ----- ----- ----- ----- -----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u>-----. -----<u>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는 제1항의 초광역협력사업을</u>	----- ----- -----. ③ ----- ----- ----- ----- ----- ----- ----- ----- ----- <u>지방시대지원단</u>-----. -----<u>지방시대지원단</u>----- -----. ④·⑤ (개정안과 같음)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②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	--	--

	<u>신속·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u>	
<u>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u>	<u>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협약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u> <u>1. 일반형: 지역발전투자협약</u> <u>2. 초광역형: 초광</u>	<u>제31조(특별협약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u> <u>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특별협약(제30조의 초광역협력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도와 민간 참여를 포함한다)

② 특별협약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협약안은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 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또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모하지 아

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

니하고 통합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 공모
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자치분권균
형성장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통합공모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특별협약
이행을 위하여 지
역균형발전특별회
계를 우선 지원하
고, 매년 필요한 예
산을 편성한다.

⑤ 초광역협력사업
은 초광역특별협약
으로 추진할 수 있
으며, 지역발전투

회계를 우선 지원
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특별협약
은 지역발전투자협
약과 연계하여 추
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협약 및 제3항
에 따른 통합공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자협약과 연계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협약의 유형별 체결요건·절차·운영·평가·갈등조정·성과배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권역별 초
광역 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
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가 설치된 권역별
로 초광역공동사업
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
체가 설치된 권역
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
로 구성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
체가 설치되지 아
니한 권역에서는
광역연합체를 중심
으로 사업단을 구
성·운영할 수 있

제31조의3(권역별 초
광역 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
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
동사업단(이하 “사
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
체가 설치된 권역
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
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④ <u>사업단의 설치</u>	
	<u>기준, 구성·운영,</u>	
	<u>민간참여 방식, 권</u>	
	<u>한과 책임, 회계 및</u>	
	<u>성과관리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 리)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u>지역균</u> <u>형발전사업</u> 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관 리시스템 구축 및 <u>균형발전에</u>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 사 등에 관한 시책 을 추진하여야 한 다.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 리) (현행과 같음)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 리) ① ----- ----- <u>균형성</u> <u>장사업</u> ----- ----- ----- ----- <u>균형성장에</u> ----- ----- ----- ----- ----- ----- ----- ----- ----- ② ----- ----- -----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 균형
성장-----

-----.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개정안과 같음)

	<u>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u>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u>발전</u>,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u>지방시대위원회</u>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 ----- ----- -----<u>성장</u>-----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 ----- -----<u>지방시대위원회</u>----- -----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

— .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
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③ -----

지방시대위원회-----

④ _____

--- 성장가능성 ---

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②

⑤ (개정안과 같음)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

②

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u>지방시대위원회</u> 에 건의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③ <u>지방시대위원회</u> 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u>지방시대위원회</u> -----.
④ ~ ⑦ (생략)	③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③ <u>지방시대위원회</u> -----.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 ⑦ (개정안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② -----
	-----	-----
	-----	-----
	-----	-----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u>지방시대위원회</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u>지방시대위원회</u>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생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③ ----- ----- ----- -----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④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 -----.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현	----- -----<u>지방시대위원회</u>----- ----- ----- -----. ③ ----- ----- ----- ----- ----- ----- -----<u>지방시대위원회</u>----- ----- -----. ④ <u>지방시대위원회</u>----- ----- ----- ----- -----.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개
--	---	---

략) ② <u>지방시대위원회</u>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u>지방시대위원회 등</u>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u>지방시대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의	행과 같음) ②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제4장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u> 제62조(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둔다. 제63조(기능) <u>자치분권균형성장</u>----- ----- -----. 1. 2. (현행과 같음)	정안과 같음) ② <u>지방시대위원회</u>----- ----- -----. 제4장 <u>지방시대위원회 등</u>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u>지방시대</u>----- ----- -----. 1. ----- <u>균형성장</u>-----
--	---	--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 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 <u>균형성장</u> -----
3. 제2장에 따른 <u>지 방시대</u>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 ·도 시행계획, 부 문별 계획 및 부문 별 시행계획, 초광 역권발전계획 및 초 광역권발전시행계 획에 관한 사항	3. ----- <u>자치 분권균형성장</u> ---	3. ----- <u>지방 시대</u> -----
4. 제3장에 따른 <u>지 역균형발전시책</u> 및 사업, 지방자치 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 12. (현행과 같음)	4. ----- <u>균 형성장시책</u> -----
5. ~ 7. (생략)		5. ~ 7. (개정안과

8. <u>지역발전투자협약</u>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음) 8. <u>특별협약</u>----- ----- -----
9. ~ 12. (생략)		9. ~ 12.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13. 제11조의3에 따른 <u>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u>
13. 다른 법률에서 <u>지방시대위원회</u>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14. -----<u>지방시대위원회</u>----- -----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현행과 같음)	15. ----- ----- <u>균형성장</u>----- ----- ----- -----
제64조(<u>지방시대위원회</u>의 구성·운영) ① <u>지방시대위원회</u>는 위원장 및 부위	제64조(<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의 구성·운영) ①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제64조(<u>지방시대위원회</u>의 구성·운영) ① <u>지방시대위원회</u>는-----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 자로 한다.

는-----
-----2명
을 포함하여 51명-

-----.

② -----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장
관-----

-----국무조정
실장,-----

-----대
표자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각 1
명을 포함하여 42
명-----

-----.

② (개정안과 같음)

	<u>제42조제1항에</u> 따 <u>른 협의체의 대표자</u> ---.	
③ <u>지방시대위원회</u> 는 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람들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u>자치분권균형성</u> <u>장</u> ----- ----- ----- ----- -----.	③ <u>지방시대</u> ----- ----- ----- ----- -----.
1. · 2. (생 략)	1. ~ 4. (현행과 같 음)	1. · 2. (개정안과 같 음)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 는 <u>지역균형발전</u>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3. ----- ----- <u>균형성장</u> ----- ----- ----- -----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④ 위촉위원은 지방 자치분권과 <u>지역균</u> <u>형발전</u> 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	④ · ⑤ (현행과 같 음)	④ ----- ----- <u>균형성</u> <u>장</u> ----- ----- ----- -----

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
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
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생략)

⑥ 위촉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⑦ 위촉위원은 제6
항에도 불구하고 제
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

⑥ -----
-----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

-----.

⑦ -----

-----자
치분권균형성장위
원회-----

-----.

⑧ 자치분권균형성

-----.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지
방시대위원회-----

-----.

⑧ 지방시대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기
확단-----
-.

⑨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제63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둔다.

⑩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⑪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지
방시대기획단----
---.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⑩ 지방시대위원회
의 심의사항을 분야
별로 사전에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지
방시대위원회에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
는 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
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를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

심의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⑫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의 -----

분과위원회에 ----

-----.

⑬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

⑭ -----제13

⑩ 지방시대위원회
의 -----

-----지방시대
위원회에-----
-----.

⑪ 지방시대위원회

-----.

⑫ -----제11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위원회의 회의, 분
과위원회 및 전문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항-----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의 회의, 소위원회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

-----.

제64조의2(자치분권
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① 자치분권분
과위원회는 자치분
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사
전 검토·조정한
다.
1. 제33조부터 제4
2조까지에 따른 과
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

항-----
-----지방시대
위원회의 회의, 분
과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

<삭 제>

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
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
· 통합방안 · 조정
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
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
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제7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
는 의견에 관한 사
항

8.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9.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위원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업무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신 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균형성장

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① 균형성장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1.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

<삭 제>

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
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5장에 따른 지
역균형발전특별회
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신설 공공기관
의 입지 결정에 관
한 사항

8. 지역혁신융복합
단지의 지정·육성
에 관한 사항

9.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균형성
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균형성장분과위
원회는 자치분권균
형성장위원회 위원

	<u>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업무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u>지방시대위원회</u>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부위원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 <u>위원장이</u> 미리 지명한 <u>부위원장</u>	② ----- ----- ----- --- <u>부위원장</u> ---.

<u>순으로</u> ---.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u>지방시대위원회</u>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6조(회의) ①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제66조(회의) ① ---- -- <u>지방시대위원회</u> ----- -----.
② <u>지방시대위원회</u>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 -----.	② <u>지방시대위원회</u> ----- ----- ----- -.
제67조(<u>시·도 지방시대위원회</u>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u>지방시대위원회</u>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7조(<u>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등의 설치·운영) ① ----- -----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제67조 (<u>시·도 지방시대위원회</u> 등의 설치·운영) ① -- ----- ----- <u>균형성장</u> ----- ----- ----- <u>지방시대위원회</u> -----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u>지방시대위원회</u> 를 지원하	②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② ----- ----- <u>지방시대위원회</u> -----

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

③ -----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및 시·군·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시대지원단-----
-----.

③ -----

-----균형성장-----

-----지방시대위원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68조(<u>지 방 시 대 기 획 단</u>) ① <u>지 방 시 대 위 원 회</u>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지 방 시 대 위 원 회</u> 소속으로 <u>지 방 시 대 기 획 단</u>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u>지 방 시 대 기 획 단</u>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u>지 방 시 대 기 획 단 지원 조직</u>) ① <u>지 방 시 대 기 획 단</u>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	제67조의2(<u>일 반 국 민 의 참여</u>) 위원회는 <u>자 치 분 권 정 책</u>에 관하여 <u>일 반 국 민</u>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8조(<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기 획 단</u>) ① <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위 원 회</u> 소속으로 <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기 획 단</u>의----- --<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위 원 회</u> 소속으로 <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기 획 단</u>---. ② -----<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기 획 단</u>----- -----. 제69조(<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기 획 단 지원 조직</u>) ① <u>자 치 분 권 균 형 성장 기 획 단</u>----	제67조의2(<u>일 반 국 민 의 참여</u>) (<u>개정안과 같음</u>) 제68조(<u>지 방 시 대 기 획 단</u>) ① <u>지 방 시 대 위 원 회</u>의----- --<u>지 방 시 대 위 원 회</u> 소속으로 <u>지 방 시 대 기 획 단</u>---. ② -----<u>지 방 시 대 기 획 단</u>----- ----- ----- -. 제69조(<u>지 방 시 대 기 획 단 지원 조직</u>) ① <u>지 방 시 대 기 획 단</u>-----
---	--	--

· 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
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
상자원부 및 국토교
통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 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보
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

②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illegible]

② (개정안과 같음)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
장-----

② 지방시대위원회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

-----.

③ -----

-----자치분
권균형성장위원회

-----.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③ -----

-----지방시
대위원회-----

-----.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③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② 지방시대위원회

③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④ -----

-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가 -----

----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에 ----
--.

제72조(관계 기관 등
과의 협조) ① 자치
분권균형성장위원
회

----- 자치
분권균형성장위원
회

-----.

④ -----

- 지방시대위원회

가 -----

-----지

방시대위원회에 -

-----.

제72조(관계 기관 등
과의 협조) ① 지방
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자
치분권균형성장위

-----지방시대 위
원회-----

존중하여야 한다.	<u>원회</u> ----- -----.	-----.
제73조(국회에의 연차 보고 등) ① <u>지방시 대위원회</u> 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u>지 역균형발전</u> 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3조(국회에의 연차 보고 등) ① <u>자치분 권균형성장위원회</u> ----- ----- ----- ----- ----- -----.	제73조(국회에의 연차 보고 등) ① <u>지방시 대위원회</u> ----- ----- <u>균 형성장</u> ----- ----- ----- ----- -----.
② 제1항의 보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② ----- ----- ----- -----.
1. 제2장에 따른 <u>지 방시대</u>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1. ----- <u>자치 분권균형성장</u> ----- -----	1. ----- <u>지방 시대</u> ----- -----
2. 제3장에 따른 <u>지 역균형발전시책</u>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2. · 3. (현행과 같 음)	2. ----- <u>균 형성장시책</u> ----- ----- -----
3. 그 밖에 지방자치 분권 및 <u>지역균형</u>		3. ----- ----- <u>균형성장</u>

<u>발전</u>에 관한 중요 사항		----- -----
제74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u>지역균형발전시책</u>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4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u>자치분권균형성장</u> ----- ----- ----- ----- ----- ----- -----.	제74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u>균형성장시책</u>----- ----- ----- ----- ----- -----.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u>으로 구분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 -----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제76조(계정의 구분) (개정안과 같음)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 1. ~ 6. (현행과 같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개정안과 같음)

7. 회계의 지역지원 계정, <u>제주특별자치 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u>으로 부 터의 전입금 8. ~ 12.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지역균형발전</u>을 촉진하기 위한 조 사 ·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 5. (생 략) 6. 회계의 지역지원 계정, <u>제주특별자치 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u>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u>지역균형 발전</u>에 관하여 대	음) 7. ----- ----- <u>제주특별 자 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및 초광 역특별계정</u>--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 음) 6. ----- ----- <u>제주특별 자 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및 초광 역특별계정</u>----- ----- 7. (현행과 같음)	② ----- ----- -----. 1. (개정안과 같음) 2. <u>균형성장</u>----- ----- ----- --- 3. ~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 <u>균형성 장</u>-----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생 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7. ~ 11.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5. 회계의 지역자율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4. (개정안과 같음) 15. -----
--	--	---

계정, <u>제주특별자치도</u> 계정 및 <u>세종특별자치시</u> 계정으로의 전출금		--- <u>제주특별자치도</u> 계정, <u>세종특별자치시</u> 계정 및 <u>초광역특별계정</u> -----
16. 그 밖에 <u>지역균형발전</u> 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16. ----- <u>균형성장</u> -----
③·④ (생략)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원계정</u> 및 <u>세종특별자치시</u>	2. ----- ----- <u>지역지원계정</u> , <u>세종특별자치시</u>	

<u>계정</u>으로부터의 전 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제주특별 자치도계정의 세출 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3. (생 략) 4.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u>지역지원계정</u> 및 <u>세종특별자치시</u> <u>계정</u>으로의 전출금 5. (생 략) ③ (생 략) 제81조(세종특별자치 시계정의 세입과 세 출) ① 회계의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u>지역지원계정</u>	<u>계정 및 초광역특별</u> <u>계정</u>----- 3. ~ 5. (현행과 같 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 음) 4. ----- ----- <u>지역지원계</u> <u>정, 세종특별자치시</u> <u>계정 및 초광역특별</u> <u>계정</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종특별자치 시계정의 세입과 세 출)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지역지원계</u>	제81조(세종특별자치 시계정의 세입과 세 출) (개정안과 같 음)
--	--	---

<u>및 제주특별자치도</u> <u>계정</u>으로부터의 전 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의 세출 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2. (생 략) 3.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u>지역지원계정</u> <u>및 제주특별자치도</u> <u>계정</u>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u>정, 제주특별자치도</u> <u>계정 및 초광역특별</u> <u>계정</u>----- 3. ~ 5. (현행과 같 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 음) 3. ----- ----- <u>지역지원계</u> <u>정, 제주특별자치도</u> <u>계정 및 초광역특별</u> <u>계정</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81조의2(초광역특</u> <u>별계정의 세입과 세</u> <u>출) ① 회계의 초광</u> <u>역특별계정의 세입</u> <u>은 다음 각 호와 같</u> <u>다.</u> <u>1. 일반회계나 다른</u>	<u>제81조의2(초광역특</u> <u>별계정의 세입과 세</u> <u>출) ①</u>----- ----- ----- --- 1. (개정안과 같음)
--	--	--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지역지원계
정 및 제주특별자치
도계정, 세종특
별자치시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
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
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
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
별계정의 세출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
연·보조 또는 용
자 등

가. 제78조제2항
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
다) 및 제7호

2. -----
-----지역지원계
정, 제주특별자치
도계정 및-----

3. ~ 5. (개정안과
같음)

②-----

-----.

1. · 2. (개정안과 같
음)

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

제1호부터 제7

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

6호에 따른 출

연 · 보조 · 융

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을 제

외한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사

업

2. 제83조제1항에 따

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지역지원계

정 및 제주특별자

치도계정, 세종특

별자치시계정으로

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

3. -----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및-----

4. (개정안과 같음)

	<u>한 경비</u>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u>지방시대위원회</u> 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 ----- ----- ----- ----- ----- ----- ----- ----- -----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 ----- ----- ----- ----- ----- ----- ----- ----- ----- -- <u>지방시대위원회</u>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	② ----- ----- ----- ----- ----- ----- ----- ----- ----- -----	② ----- ----- ----- ----- ----- ----- ----- ----- ----- -----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
는 지역균형발전시
책의 투자방향에 관
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
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
견을 매년 6월 15일
까지 기획재정부장
관 및 과학기술정보

-----자
치분권균형성장위
원회-----.

③ -----

--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

④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방시대위원회

③ -----

-- 지방시대위원회

④ 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장시책---

통신부장관에게 통 보할 수 있다.	----- -----.	-----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u>제4항</u> 에 따른 <u>지방시대위 원회의</u> 의견을 <u>고려</u> <u>하여 예산을 편성</u> <u>및 조정·배분하여</u> <u>야 한다.</u>	⑤ ----- ----- ----- <u>예산편성</u> <u>에 관하여, 제4항--</u> ----- <u>자치분권균형성장</u> <u>위원회</u> ----- <u>들어</u> <u>야</u> ----.	⑤ ----- ----- ----- ----- ----- <u>지방시대위원회--</u> -----.
⑥ <u>지방시대위원회</u> 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u>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u> ----- ----- ----- ----- ----- ----- -----.	⑥ <u>지방시대위원회</u> ----- ----- ----- ----- ----- -----.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 제) ① <u>제78조제2 항·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u> 의 사 업에 대한 보조금에 는 「보조금 관리에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 제) (현행과 같음)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 제) ① <u>제78조제2 항·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 81조제2항 및 제81 조의2제2항</u>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21조 ·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1조 · 제31조의2 ·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This image shows a vertical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② · ③ (개정안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현행과 같음)

같음)

④ -----

세출예산, -----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

-----.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

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분권균형

성장 종합계획 등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전
까지는 종전의 지
방시대 종합계획을
이 법에 따른 자치
분권균형성장 종합
계획으로 본다. 자
치분권균형성장 중
합계획 수립 시 이
에 따른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은
종합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시·도
계획, 부문별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
획은 각각 제7조부
터 제9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시·도

제2조(지방시대위원

회 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
조제6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계획, 부문별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
획이 수립되기 전
까지는 이 법에 따
른 부문별 계획, 초
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
역권발전시행계획
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시·도 시
행계획, 부문별 시
행계획 및 초광역
권발전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
계획 및 시·도 시
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에 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

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
위원회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
위원회로 본다.

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
조제4항 및 제26
조제1항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각
각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
호 중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⑨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중 연번 15
번의 국유재산특
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⑩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법률 제21539
호 국제물류진흥
지역 지정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 ”을 “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 ”으로 한다.

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1항 중
“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법」 ”
을 “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으

로 한다.

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한
다.

제7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
75조제1항,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
제7항 중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
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
31조의3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각
각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⑯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⑰ 노후거점산업
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
을 “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으
로 한다.

⑬ 농어촌구조개
선 특별회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
호 및 제5조제2항
제5호 중 “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⑳ 농촌공간 재구
조화 및 재생지원
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㉑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한
다.

제 11 조 의 6 제 1 항
중 “ 「지 방 자 치 분
권 및 지역 균형 발
전에 관한 특별
법」 ”을 “ 「지 방 자
치 분 권 및 균 형 성
장에 관한 특별
법」 ”으로 한다.

㉔ 도로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다.

제 5 조 제 2 항 제 3 호
중 “ 「지 방 자 치 분
권 및 지역 균형 발
전에 관한 특별
법」 ”을 “ 「지 방 자
치 분 권 및 균 형 성
장에 관한 특별
법」 ”으로 한다.

㉕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 일 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
2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㉕ 도청이전을 위
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㉔ 미래자동차 부
품산업의 전환촉
진 및 생태계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㉘ 법률 제21337
호 반도체산업 경
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
조제3항 및 제40
조제2호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각
각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㉙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
을 “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으
로 한다.

③⑩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3조제3항제7호
나목4) 중 “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중 “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 ”을 “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 ”으로 한다.

㉓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4항 제2호,
제22조의8 제2항
및 제45조의11 제3
항 제2호 중 “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을 각
각 “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③④ 생활물류서비
스산업발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③⑤ 세종특별자치
시 설치 등에 관
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1조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역사문화권 정
비 등에 관한 특
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를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㉔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한
다.

제19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법」”으로 한다.

④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호 · 제1
호의2, 제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
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
다.

④③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한

다.

제7조의3제4항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
을 “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으
로 한다.

④ 법률 제21446
호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
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2조, 제134조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
항, 제145조, 제20
7조, 제208조, 제2
09조, 제210조, 제

221조 제3항 제1호,
제225조 제1항 및
제226조 중 “ 「지
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을 각
각 “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으
로 한다.

④ 전북특별자치
도 설치 및 글로
벌 생명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 · 제
2항 및 제116조
중 “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⑥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④⑦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
의2, 제63조 제1항
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 제1항 제
2호 및 제99조의4
제1항 제1호가목1)
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주택도시기금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④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10
조제3항, 제1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 제17조제1
항 및 제21조제1
항 중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호외의부분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
6조 중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㉟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㊱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 제1항 제10호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
법」”을 “「지방자
치분권 및 균형성
장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⑤⑦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복귀 지원
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을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
로 한다.

⑤⑧ 혁신도시 조성

	<u>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u>
<u>제4조(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u>	<u>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u>

시 종전의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도 지
방 시대 위원회는
제67조의 개정규
정에 따른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
위원회로 본다.

제5조(자치분권균형

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
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
전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
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성장기확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
전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68조에 따
른 지방시대기획
단은 제68조의 개
정규정에 따른 자
치분권균형성장기
확단으로 본다.

제6조(시·도 시행
계획, 부문별 시행
계획 및 초광역발
전시행계획의 추
진실적 제출에 관
한 특례) 제7조부
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전년도 시·도

<삭 제>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
역권발전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제
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그
다음 연도까지는
각각 종전의 시·
도 시행계획, 부문
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국회에의 연
차보고에 관한 특
례) 제73조에도 불
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다음 연
도에 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의 작성 대
상은 기존 지방시
대 종합계획의 수
립과 관리, 제3장
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시책 및 지방
자치분권 과제 등
의 성과와 향후
계획, 그밖에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분
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제5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
균형성장 계획”으
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제1호
중 “지방시대위원
회”를 “자치분권균
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

례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제8호

중 “지방시대 계

획”을 “자치분권균

형성장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지방시대위

원회”를 각각 “자

치분권균형성장위

원회”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

시대위원장”을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위원장

(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77조제7항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으로 한다.

⑥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9조 제3항 제2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으로 한다.

⑦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으로 한다.

⑧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

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로 한다.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3항 중 “지
방시대”를 “자치분
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으로 한다.

⑪ 역사문화권 정

비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
방시대”를 “자치분
권 균형 성장”으로
한다.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
균형성장 계획”으
로 한다.

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및 제3
2조제2항 중 “지방
시대위원회”를 각
각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로 한
다.

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의3제4항 중
“지방시대위원회”
를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로 한
다.

⑮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

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
를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로 한
다.

⑩ 중부내륙연계발
전지역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6항, 제10
조제3항, 제11조제
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
시대위원회”를 각

각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로 한
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
방시 대 위 원 회 (이
하 “지방시대위원
회””를 “자치분권
균 형 성 장 위 원 회
(이하 “자치분권균
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⑰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중 “지방시
대”를 “자치분권균
형성장”으로 한다

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방시대위원
회”를 “자치분권균
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시
대”를 “자치분권균
형성장”으로 한다

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
장”으로 한다.

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
방시대”를 “자치분
권균형성장”으로
한다.

㉒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
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
단서, 제5조의2제5
항 본문 · 단서 및
제2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시대위원

	<u>회”를 각각 “자치 분권균형성장위원 회”로 한다.</u> <u>제5조의2제9항 중 “지방시대”를 “자 치분권균형성장” 으로 한다.</u>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발전 및”을 “성장 및”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을 “것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이란”을 ““균형성장”이란”으로, “발전 격차”를 “성장 격차”로,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발전을”을 “성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발전”을 “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발전을”을 “성장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8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균형발전과”를 “균형성장과”로, “발전을”을 “성장을”로 하고,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을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을 “균형성장시책의 추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지역균형발전에”를 “균형성장에”로, “지역균형발전을”을 “균형성장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 및”을 “균형성장 및”으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균형성장 거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발전 거점”을 “성장 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발전”을 “성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을 “(특별협약의 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균형성장사업”으로, “균형발전에”를 “균형성장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

장”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을 “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발전가능성”을 “성장가능성”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특별협약”이라 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64조제1항 중 “40명”을 “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을 “국

무조정실장,”으로, “대표자”를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4조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한다.

제7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
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
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4조제4항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균형성장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으로, “고려하여 예산
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
조제2항”을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출예산 및”을 “세출예

산,”으로, “세출예산 상호”를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로 한다.

제94조 중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을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번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법률 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77조제7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31조의3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⑧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3항 및 제40조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㉞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㉟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㊲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제22조의8제2항 및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㉗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1호의2, 제4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 제145조, 제207

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21조제3항제1호, 제225조제1항 및 제22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2항 및 제11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⑧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㉗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㉟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㊲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㊳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u>	<u>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u>발전</u>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u>지역균형발전을</u>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u>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성장</u> 및 ----- ----- <u>균형성</u> <u>장</u> ----- ----- ----- <u>것</u> 을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u>하</u> 고, 지방자치단체의 <u>정책결정</u>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u>하</u> <u>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u> <u>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u> <u>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u>

	<u>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u> ---
2. “ <u>지역균형발전</u> ”이란 지역 간 <u>발전 격차</u> 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u>발전역량</u> 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u>발전을</u>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 <u>균형성장</u> ”이란 ----- <u>성장 격차</u> ----- ----- <u>성장역량</u> ----- ----- ----- <u>성장을</u> ----- ----- ----- --.
3. “ <u>지역혁신</u> ”이란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 · 산업생산 · 기업지원 · 문화 ·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u>발전역량</u> 을 창출 · 활용 ·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 ----- ----- ----- ----- <u>성장역량</u>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 <u>초광역권</u> ”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u>발전</u> 에 필요한	7. ----- ----- <u>성장</u> -----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

8. ----- 균형성장

-- 성장을 -----

--.

8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 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

9. ~ 14. (생략)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
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
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
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
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
한다.

16. ~ 18.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
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
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
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

하는 협약을 말한다.

9. ~ 14. (현행과 같음)

15. -----

----- 균형성장 -----

16. ~ 18.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균형성장과 -----

----- 성장을 -----

----- 균형성장 -----

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

② -----
----- 균형성장-----

-----.

③ -----
----- 균형성장-----

-----.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
----- 균형성장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균형성장-----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생략)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

----- 균형성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균형성장 -----

2. ----- 균형성장시책 -----

3. (현행과 같음)

4. ----- 균형성장 -----
--

④ ~ ⑦ (생략)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략)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균형
성장-----

-----.

② -----
-----.

1. -----
균형성장-----

2. (현행과 같음)
3. ----- 균형성장시책 -

4. -----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략)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 균형성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균형성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

----- 성장역량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성장역량-----

수 있는 가능성

② ~ ⑤ (생략)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
----- 균형성장-----

-----.

1. ~ 8.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
-- 균형성장에 -----

균형성장을 -----

-----.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
----- 균형성장 및 -----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u>지역균형발전 거점</u>을 육성하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u>발전 거점</u>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지역균형발전 거점</u>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	----- <u>균형성장 거점</u>----- ----- ----- -----. 1. ----- ----- ----- ----- ----- ----- ----- ----- ----- ----- ----- <u>성장 거점</u> ----- ----- ----- 2. (현행과 같음) 3. <u>균형성장</u> ----- ----- ----- -----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	---

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생략)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

----- 성장 -----

-----.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균형성장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수 있다.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신 설>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 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
----- 균형성장사업-----

----- 균형 성장에 -----

-----.

② -----

----- 균형성장-----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등) ① -----

성장-----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성장가능성-----

경우 시·군·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 <u>균형성장</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3조(기능) ----- ----- -----.
1.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 <u>균형성장</u> ----- ----- -----
2. 지방자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 <u>균형성장</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3장에 따른 <u>지역균형발전</u> <u>시책</u>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 <u>균형성장시책</u> -----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u>지역발전투자협약</u> 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u>특별협약</u> ----- -----
9. ~ 12. (현행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3. <u>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 가 등에 관한 사항</u>
13. (생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u>지 역균형발전</u> 과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	15. ----- <u>균 형성장</u> ----- ----- -----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u>4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 ----- ----- <u>42명</u> ----- ----- -----.
②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u>행정안전부장관</u>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 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 ----- ----- <u>법무부장관, 행정안 전부장관</u>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
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
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
의 대표자로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
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
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생략)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
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
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 국무조정실장, -----

--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균형성장 -----

4. (현행과 같음)

④ -----
균형성장-----

-----.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생략)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

----- 균형성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균형성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 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 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과 관련 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 ----- ----- ----- <u>균형성장</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② (생략)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 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과 관련 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 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 ----- <u>균형성장</u> ----- ----- ----- ----- -----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 치분권 및 <u>지역균형발전</u> 에 대하 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④ ----- ----- <u>균형성장</u> ----- ----- ----- ----- -----.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
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
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
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
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 균형성장-----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균형성장시책 -

3. ----- 균
형성장-----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균
형성장시책 -----

-----.

제76조(계정의 구분) -----
-----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 12. (생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생략)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8. ~ 12.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균형성장-----

3. ~ 5. (현행과 같음)
6.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7. ----- 균형성장-----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 11. (생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④ (생략)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7. ~ 11. (현행과 같음)

② -----

1. ~ 14. (현행과 같음)

15.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16. ----- 균형성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 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 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u>으로의 전출금 5. (생 략) ③ (생 략)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 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 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 (현행과 같음) 2. ----- <u>지역지 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3. ~ 5.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지역지 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지역지 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3. ~ 5. (현행과 같음) ② -----
--	---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략)

③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u> <u>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u>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 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 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 ·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 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 에 필요한 경비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u>지역균형</u> <u>발전시책</u> 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 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	④ ----- <u>균형성장시</u> <u>책</u> ----- ----- -----

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
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
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
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
배분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
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
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
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
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
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
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

⑤ -----
----- 예산편성에 관
하여 제4항----- 들
어야 -----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
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제8
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

-----.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세출예산, -----
-----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 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
-----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에 활용하여야 한다.	----- -----.
---------------------------------	-----------------